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9. 3.	개정	2017. 3.
개정	2000. 3.	개정	2020. 3.
개정	2001. 4.	개정	2020. 5.
개정	2002. 4.	개정	2021. 5.
개정	2003. 10.	개정	2022. 6.
개정	2004. 4.	개정	2022. 7.
개정	2005. 4.	개정	2022. 11.
개정	2006. 3.	개정	2023. 4.
개정	2007. 1.	개정	2023. 10.
개정	2007. 10.	개정	2024. 01.
개정	2009. 1.	개정	2024. 04.
개정	2010. 1.		
개정	2011. 1.		
개정	2012. 1.		
개정	2012. 12.		
개정	2013. 11.		
개정	2014. 4.		
개정	2015. 5.		
개정	2015. 9.		
개정	2016.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및 창작 활동, 산학협동 및 봉사, 그리고 교원 자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원의 업적 및 자질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 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계약제 교육전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재직 중인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에 대한 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6.02.)

제3조 (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평가의 영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육 및 학생지도
2. 연구 및 창작활동
3. 산학협동 및 봉사
4. 산학협력
5. 교원의 역량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

제4조 (평가시기 및 절차)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원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내역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항목별 주관 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교원업적평가의 항목별 주관 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3.07., 2020.03.26., 2023.04.04)

1. 교원업적평가는 기획처를 주무부서로 한다.
2.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수업에 관한 사항, 재학생 충원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3.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처에서 주관한다.
4.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한다.
5.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한다.
6.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관리산업체 및 동아리활동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
7. 교원업적평가 영역 중 취업에 관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 외의 영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9. 교원의 역량에 관한 평가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④교원의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9.07., 2020.03.26., 2022.06.02.)

1.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의 역량평가는 소관 단과대학 학장의 평가를 40% 반영하고, 총장의 평가를 60% 반영하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별첨 1] 교원업적평가를 따른다.
2. 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역량평가는 소관 단과대학 학장/산학협력단장의 평가를 40% 반영하고, 총장의 평가를 60% 반영하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별첨 2] 교원업적평가(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를 따른다.

제5조 (업적의 인정기간)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전년도 11월 2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20일까지의 실적으로 평가한다.(개정 2015.05.04., 2020.03.26., 2022.07.14.)

②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평가한다.(신설 2022.07.14.)

③각 주관부서는 교원업적과 관련한 실적자료의 인정여부를 검토, 확인, 보완하고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 이전까지 기획처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④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교원업적과 관련한 실적자료는 5월 31일까지 기획처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07.14.)

⑤기획처장은 교원의 업적내역서와 자료 등을 확인한 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며, 총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원의 업적평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각 교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교원은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적평가 점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획처를 경유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09.07, 2020.03.26)

②총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09.07.)

④재심사의 의견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제로 하며, 재심 결과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09.07.)

제7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교원업적을 평가·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09.07., 2020.03.26., 2022.06.02.)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각 행정부서별 교원업적평가 결과 및 역량평가에 대한 검증, 평정, 인증에 관한 사항
3.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업적평가

제8조 (업적평가 유형) 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문적 특성과 각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대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평가한다.

1. 교육중심
2. 교육·연구중심
3. 연구중심
4. 산학협력중심

제9조 (평가기준 및 원점수 산정기준) ①교원의 업적평가는 당해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②업적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지표와 원점수 배점기준은 [별첨 3] 내지 [별첨 6]과 같다.(개정 2022.06.02.)

③업적평가기준의 원점수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평가제외 및 고려대상) ①교원이 휴직, 연구년 및 연수, 파견 등으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교원은 당해 연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07.14.)

③당해 연도 3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당해 연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07.14.)

④당해 연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되는 교원의 목표는 월 할로 환산하여 목표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7.14)

⑤당해 연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목표는 월 할로 환산하여 목표량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07.14.)

⑥교무위원 또는 총장이 특정 직무를 위촉하여 수행하는 교원의 업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

제11조 (평가결과의 관리) ①각 행정부서는 제4조제3항에 명시된 교수업적평가 항목의 평가자료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기획처장은 최종 확정된 업적평가결과를 수합·관리하여야 한다.

③업적평가에 관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업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데 활용한다.

1. 교원의 승진 및 재계약(재임용) 대상자의 선정
2. 장려교원의 선정
3. 교원의 연구년 대상자 선정
4. 교원의 특별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5.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 선정
6. 교원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결정

제13조 (세부사항) 교원업적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는 소급하여 이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적 인정의 특례) 2010년도 12월의 업적 중 동 연도에 평가받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는 2011년도 업적에 업적평가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2학년도 업적평가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적 인정의 특례) 2012학년도 연구실적 중 2.2 논문 평가영역의 2.2.2 국제저명학회지, 2.2.3 국제일반학회지, 2.2.4 국내저명학회지의 평가실적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50% 초과인 경우에는 2012학년도 업적평가에서는 달성도 15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달성분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에 포함하여 반영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분(2012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2학년도 업적평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2조 (2012년 3월 신규임용자 종합평가등급의 특례) 2012년 3월 신규임용자 중 업적평가점수가 5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나 역량평가점수가 50점 만점에 18점 미만으로 최종평가등급이 D등급 판정인 경우에 한하여 C등급으로 상향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3학년도 업적평가분(2012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4학년도 업적평가분(2013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2.)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4학년도 업적평가분(2013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업적평가분(2014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07.)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5학년도 업적평가분(2014년 12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7.)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16학년도 업적평가분(2015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업적평가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적 인정의 특례)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액이 2억이상의 매출을 내고, 산학협력단에 500만원 상당의 기부가 되었을 경우 SCI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액이 1억이상의 매출을 내고, 산학협력단에 300만원상당의 기부가 되었을 경우 KCI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부 칙(2020.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업적평가분(2019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업적평가분(2019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혁신 참여실적' 평가요소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시행일로부터 반영한다.

부 칙(2021.0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학년도 업적평가분(2020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업적평가분(2021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업적평가분(2022년 6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업적평가분(2022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하되, 별첨5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업적평가분(2023년 6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업적평가분(2022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업적평가분(2023년 6월 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업적평가분(2023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업적평가분(2023년 11월 21일 평가시행)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교원업적 평가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

◎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체계

1. 업적평가 :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및 창작활동, 산학협동 및 봉사,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
 - 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활동 및 취업,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 2)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 : 학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 및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의 대외활동에 대한 평가
 - 3)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활동 및 관리산업체 관리 등의 산학협력 및 취업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 4) 산학협력 업적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기술이전, 공동연구, 학생취업, 위탁교육, 특허 등의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

2. 역량평가 : 공통역량,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대학/학과 발전역량으로 구분
 - 1) 역량평가는 총장(60%)과 소관 단과대학 학장(40%)이 평가하며, 총장 평가부분은 별도로 정한다.
 - 2) 공통역량(개인평가) : 본교 교직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량평가(공통역량, 특임활동)
 - 3)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학과평가) : 대학주요지표에 대한 학과별 역량평가(학생관리실적, 취업관리 실적)
 - ※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평가는 대학주요지표(학생관리실적, 취업관리실적)를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학과별 학생관리실적 및 취업관리실적을 고려하여 교원 개인별로 평가한다.
 - 4) 대학/학과 발전역량(개인평가) :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및 역량에 대한 평가(교육성과관리실적, 교육내실화실적, 산업체관리실적)

3. 교원평가 : 업적평가(50%) + 역량평가(50%)

4. 종합(최종)평가 등급 부여방식
 - 1) 종합평가 등급은 최종점수 순위에 따라 S, A, B, C, D의 등급을 부여하며, (S+A)와 D등급을 각각 15% 내외, B와 C등급은 각각 35% 내외로 하여 제한적인 평가 자율성을 확보함.

등급	S	A	B	C	D
비중(%)	15		35	35	15
등급부여방식	15% 내외		35% 내외	35% 내외	15% 내외

- ※ 4)에 해당되는 교원의 수는 위의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종합평가 등급은 당해연도 전임교원의 종합(최종)평가 등급을 적용한 등급별 최종점수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부여 비중은 전임교원 등급 부여 비중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익년도에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당해연도 교원업적평가 종합(최종)평가 등급 부여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4) 장려교원에 해당되는 교원은 당해연도 교원업적평가 종합(최종)평가 등급 부여시 D등급을 부여한다.

◎ 업적 및 역량평가 평가 유형

구 분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및 창작활동	산학협동 및 봉사	유 형				
업적평가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	40 %	40 %	20 %	연구중심				
	50 %	30 %	20 %	교육/연구중심				
	60 %	20 %	20 %	교육중심				
	※ 폐과(신입생, 재학생, 취업대상학생 없는 경우) 또는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우송교양대학 등)의 업적평가는 유형 선택에 따른 비중으로 산정하되 별도 평가함. 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영역 중 “1.2 수업평가 - 1.5 학생지도” : 가중치 22% ②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영역 : 가중치 100% ③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영역 : 가중치 선택 가능 ④ 별도 해당교원 특임활동(정량적, 정성적 목표 부여) : 가중치 = 300% - (① + ② + ③) ※ 소속학과 대학원인 교원의 업적평가는 유형 선택에 따른 비중으로 산정하되 별도 평가함. 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영역 : 가중치 선택 가능 ②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영역 : 가중치 100% ③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영역 : 가중치 선택 가능 ④ 별도 해당교원 특임활동(정량적, 정성적 목표 부여) : 가중치 = 300% - (① + ② + ③) ※ 특임활동(정량적, 정성적 목표 부여)은 해당년도 업적평가 시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장(학장, 원장) 및 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획처로 제출함. (산업체경력교원은 각 영역별 가중치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구 분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및 창작활동	산학협동 및 봉사	산학협력	유 형			
업적평가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40 %	60 %			산학협력중심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가중치 합은 67로 고정이며, 그 외 영역의 가중치 합은 173로 선택하여야 함.							
역량평가	공통역량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대학/학과 발전역량			유 형
	공통 역량	특임 활동	학생관리실적	취업관리실적	교육성과 관리실적	교육내실화 실적	산업체 관리실적	
	20 %	10 %	20 %	20 %	18 %	6 %	6 %	연구중심
	20 %	10 %	20 %	20 %	12 %	12 %	6 %	교육/연구중심
	20 %	10 %	20 %	20 %	9 %	15 %	6 %	교육중심
20 %	10 %	20 %	20 %	9 %	3 %	18 %	산학협력중심	

◎ 역량평가 평가내용

역량평가	역량구분	역량세부구분	세부내용
	공통역량	공통역량 (성취지향, 책임의식, 상호존중)	
특임활동			1. 책임의식의 정착 / 전파 주도 2. 책임준수 모범 제시 3.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 보유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학생관리실적		1. 상호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2. 내 / 외부 구성원들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3. 상대방에 대한 이해 / 원활한 업무 협조
	취업관리실적		1. 당해연도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 학과(부)별 재학생총원율, 중도탈락률 현황 2. 편입학 여석 배정 현황
대학/학과 발전역량	교육성과관리실적		1.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학과별 종합 취업률 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학과별 종합 취업률 3.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6월) 유지취업률 4. 개인별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실적
	교육내실화실적		1. 대학 성과 관리 지원 2. 교내 주요회의 참석 3. 법정 교육 이수
	산업체관리실적		1. 책임시수 초과 및 미달 시수 2. 계절학기 담당 시수 3. 담당 강좌 강의 평가 4. 특별교육과정 운영
			1. 외부위탁연구비 수주실적 2. 신규 MOU 체결실적 3.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실적 4. 공유협업 활동실적

※ 평가기준 : 학과 명칭 변경된 경우 현재 학과에 편입하여 산정함.

◎ 업적 및 역량평가요소 등급체계

1. 업적평가(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및 창작활동 일부분, 산학협동 및 봉사), 역량평가

평가 등급	I	II	III	IV	V	VI	VII
	(Far Exceed)	(Exceed)	(Meet)	(Improving)	(Challenged)	(Needs Improvement)	
배점	100	80	60	40	20	0	-20
정량적 목표	130% 이상	115% 이상	100% 이상	85% 이상	60% 이상	60% 미만	40% 미만
정성적 목표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 이하의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냄	재학생총원율 항목에만 적용

◎ 업적평가요소 등급체계(국제저명 / 국제일반 / 국내저명학회지)

예) 목표치 150점 일경우의 업적배점

논문게재 실적(배점기준)	목표 달성도	환산점수
300 점	200 % 달성(목표대비 150%까지 평가점수 인정)	150 점
225 점	150 % 달성	150 점
150 점	100 % 달성(Minimum Requirement 충족)	100 점
75 점	50 % 달성(목표미달)	50 점
60 점	40 % 달성(목표대비 40%미만부터는 감점제 도입)	40 점
45 점	30 % 달성(목표미달)	-10 점
30 점	20 % 달성(목표미달)	-20 점
0 점	0 % 달성(목표미달)	-40 점

[별첨 2]

교원업적 평가

(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 평가 영역

1. 교원업적 평가(100%) = 업적평가(50%) + 역량평가(50%)

1) 업적평가: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수행’, ‘산학협력 및 봉사’영역에 대한 정량적 평가

- 교육 및 학생지도: 교육과정 운영 전반 및 대학경쟁력 제고에 관한 활동 사항

- 연구 수행: 연구비 수주 및 논문 게재 등 연구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및 봉사: 학생취업, 현장실습, 업무협약 등 산학협력 및 대학 봉사에 대한 평가

2) 역량평가: 대내·외 활동 및 특임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소관 단과대학 학장/산학협력단장 (40%), 총장(60%) 평가

◎ 평가 유형 및 비율

구분	교육 및 학생지도	연구 수행	산학협력 및 봉사	유형
업적평가 (100% 기준)	40%	20%	40%	교육중심
	20%	40%	40%	연구중심
	20%	20%	60%	산학협력중심

역량평가	공통역량		대학주요지표 학과역량		대학/학과 발전역량		유형
	공통 역량	특임 활동	학생 관리 실적	취업 관리 실적	교육성과 관리 및 교육 내실화 실적	산업체 관리실적 및 연구실적	
	20 %	10 %	15 %	15 %	20 %	20 %	교육중심
	20 %	10 %	15 %	15 %	15 %	25 %	연구중심
	20 %	10 %	15 %	15 %	10 %	30 %	산학협력중심

◎ 교원업적 평가 등급 및 비중

평가 등급	S	A	B	C	D
비중(%)	15% 내외		35% 내외	35% 내외	15% 내외

◎ 세부항목 평가 체계

평가 구분	I	II	III	IV	V	VI	VII
	(Far Exceed)	(Exceed)	(Meet)	(Improving)	(Challenged)	(Needs Improvement)	
배점	100	80	60	40	20	0	-20
정량적 목표치 달성도	130% 이상	115% 이상	100% 이상	85%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정성적 목표치 달성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 이하의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목표대비 일정. 양질적인 면 등에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냄	재학생총원을 항목에만 적용

[별첨 3]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

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 준	평 가 기 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1.1 학생 관리	1.1.1 신입생 총원율	학과	20%		•신입생 수/모집정원×100 (단과대학, 학부(과)별) (감점제)	99%			
	1.1.2 재학생 총원율(4/1, 10/1)	학과	10%		•기본 점수 + ((해당연도 총원율 - 전년도 총원율)*계수) - ((기준값-해당연도 총원율)*계수)				
	1.1.3 중도탈락율(4/1, 10/1)		10%		•기본 점수 + ((해당연도 중도탈락률 - 전년도 중도탈락률)*계수) - ((기준값-해당연도 중도탈락률)*계수)				
	1.1.4 신입생 수준	학과	5%		•1차 합격자 등록률(수시 및 정시)				
* 1.1.2 ~ 1.1.3 에 관한 평가는 대학 전체의 재학생 수 증감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2 수업 평가	1.2.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	개인	12%		•학기당 대상강좌 총 평점 평균				
1.3 교육 개발	1.3.1 교육자료 개발활용	개인	10%	학기당 3-20	•교육자료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	연구중심:25점 교육연구중심:35점 교육중심:45점			
1.4 수업 담당	1.4.1 담당과목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영향)	개인		과목당 5	•학기당 2과목 초과 담당 과목 수 (학부(과)장 보직교수는 학기당 1과목 초과 담당 과목 수)				
	1.4.2 외국어 강의	개인		학기당 2.5~10점	•외국어강의 교과목 수				
	1.4.3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개인		학기당 1과목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과목의 학점단위 (1·2학기 : Learning Concert, 여름·겨울학기 : Active Learning)				
	1.4.4 수업일수 미준수(감점)	개인		학기당 (-2.5~0)	•1학기 또는 2학기 수업일수 미달 시 감점(책임시수별 수업일수 차등 적용)				
	1.4.5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미준수(감점)	개인		과목당 (-1.5~-0.5)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담당 과목 수에 따라 차등)				
	1.4.6 성적평가 입력기간 미준수(감점)	개인		과목당 (-1.5~-0.5)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담당 과목 수에 따라 차등)				
	1.4.7 성적 이의신청 미응답(감점)	개인		학기당 (-3~-1)	•성적 이의신청 미응대 시 감점 (건수 구간별 감점)				
1.5 학생 지도	1.5.1 학생상담 지도	개인	학기당 10	•학기당 20회 (1회 부족시 1점 감점)					
	1.5.2 학생행사 임장지도	개인	학기당 1,3,5	•학기당 평가에 따라 3단계 배점					
1.6 산학 협력	1.6.1 학과별 취업률	학과	5%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					
			5%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마감일 종합취업률					
			5%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6월) 유지취업률					
	1.6.2 개인별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실적	개인	13%		•지도학생 취업 1인당 1점 배점 •비지도학생 취업 1인당 0.67점 배점	교원 개인당 5점			
	1.6.3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설	개인	5%	건당 10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건수	12점			
	1.6.4 현장실습 및 인턴십	개인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 학생 수 (평가등급 구간별 배점)				
	1.6.5 캡스톤디자인 지도	개인			•전시회 참여 작품수 × 1 (최대 10점)				
1.6.6 창업(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인			•창업교육 담당 건수 × 3					
1.6.7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개인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건수 × 3					

2.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2.1 학과 평가 (연구)	2.1.1 국내외 저명학회지(학과)	학과	10%		• 학부(과)별 국내외 저명 학회지 논문 총점				
	2.1.2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학과)	학과			• 학부(과)별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				
2.2 논문	2.2.1 박사학위 논문	개인	-	200		- 승진심사요건에만 적용			
	2.2.2 국제저명학회지	개인	30-50%	450	• 기존방식에서 상한부여 (목표대비 150%까지 평가점수 인정) • 목표달성이 미흡한 경우 감점부여 (목표대비 40%미만부터 감점부여)	- 중심유형별 기본목표치 연구중심 : 450점 교육/연구중심 : 250점 교육중심 : 150점			
	2.2.3 국제일반학회지	개인		150					
	2.2.4 국내저명학회지	개인		150					
	2.2.5 국내일반학회지	개인	0-20%		100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2.6 본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	개인			100				
	2.2.7 타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	개인			80				
	2.2.8 종합 전문잡지	개인	음영부분 합계	50		- 기본목표치 45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2.9 국내저명학회지에의 논평, 서평 등	개인	0-20%	30					
2.3 저서	2.3.1 전문저서(대학교재 등)	개인	0-20%	100-150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3.2 번역서(최초번역) 및 중등교재	개인		80-100					
	2.3.3 수험서 및 사전류	개인		50					
	2.3.4 학술자료집 및 편저	개인		50					
	2.3.5 저서 개정판	개인		30	• 1/3 이상 개정시 인정				
2.4 학술 대회	2.4.1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개인		150					
	2.4.2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개인		100					
	2.4.3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개인		80/40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8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40점
	2.4.4 전국규모학술대회 논문발표	개인		40/2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4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20점
	2.4.5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	개인		30/15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3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15점
	2.4.6 전국규모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개인		20/1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2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10점
	2.4.7 국제학술대회의 사회 (좌장, 토론)	개인		30/15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3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15점
	2.4.8 전국규모학술대회의 사회 (좌장, 토론)	개인		20/1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2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10점
	2.4.9 전국규모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	개인							2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2.5 창작 발표	2.5.1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특선이상	개인	0-5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인정) 	- 기본목표치 1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2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입선	개인		75					
	2.5.3 공인된 공모전 특선이상	개인		75					
	2.5.4 공인된 개인전 (1인, 2인, 기획전)	개인		37.5 - 150					
	2.5.5 공인된 초대전 출품 (국제, 국내)	개인	0-20%	35 -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인정) 	- 기본목표치 142.5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6 공인된 공모전 입선	개인		37.5					
	2.5.7 문예 단행본 출판	개인	0-50%	150	• 평가기준 엄격화	- 기본목표치 2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8 문예지 게재(소설, 희곡)	개인		50	• 평가기준 엄격화				
	2.5.9 문예지 게재 (시, 수필, 평론)	개인		30	• 평가기준 엄격화				
2.6 산학 협력	2.6.1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보고서	개인	10-4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으로 업적이 인정된 경우의 외부 위탁 연구보고서는 제외 				
	2.6.2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	개인		100만원당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수입금액으로 평가 				- 중심유형별 기본목표치 연구중심 : 900점 (4,000만원)이상 교육/연구중심 : 675점 (3,000만원)이상 교육중심 : 450점 (2,000만원)이상
	2.6.3 국제특허 등록	개인	0-50%	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등록시 50점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6.4 국제특허 출원	개인		100					
	2.6.5 국내특허 등록	개인		225					
	2.6.6 국내특허 출원	개인		50					
	2.6.7 실용신안 등록	개인		50					
	2.6.8 기술이전 수입 금액	개인		100만원당 63					• 기술이전 수입료 총액
	2.6.9 기술이전 건수	개인		50					• 기술이전 건수
	2.6.10 교원 창업 및 운영	개인		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운영, 기금납부, 채용 등 실적에 따라 10-50점

3.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3.1 교외 봉사	3.1.1 정부 중앙행정기관 자문 위원(산하기관 포함)	개인	0-5%	10	• 항목당 5건 이내만 가능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1.2 광역자치단체이상 자문위원	개인		5					
	3.1.3 시·군·구 자문위원	개인		2					
	3.1.4 국제학회 및 단체 임원	개인		10					
	3.1.5 전국규모 전문학회 회장단	개인		10					
	3.1.6 전국규모 전문학회 임원	개인		5	• 최대 26점까지 인정				
	3.1.7 정부 중앙행정기관 심사 위원(산하기관 포함)	개인		5					
	3.1.8 시·군·구 심사위원	개인		2					
	3.1.9 신문투고 및 방송출연	개인		10					• 관련 전문분야에 한하며, 우송 대학교 소속을 밝힌 경우 인정하며, 학기당 26점까지 인정
	3.1.10 잡지게재 및 기고	개인		10					
	3.1.11 비교과활동 및 동아리의 지역사회 협력활동	개인							5
3.2 교내 봉사	3.2.1 학부장급	개인	0-20%		• 평가대상 교원 상대평가함 (순위)	-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2.2 취업주임교수급	개인	0-10%						
	3.2.3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	개인	0-20%	5-30	• 중요도 및 역할별 차등 배점				
	3.2.4 위원회위원 및 학생단체 지도교수	개인		건당 2					
	3.2.5 국제교류	개인		건당 1,3,5	• 해외출장 결과에 따른 3단계 평가				
	3.2.6 입시홍보 교교방문	개인		2	• 입시홍보 고교수에 따라 배점				
	3.2.7 입시홍보 교교방문 특강	개인		5	• 입시홍보 고교방문시 특강				
3.3 산학 협력	3.3.1 산업현장연수/교수법 연수	개인	0-5%	주당 5	• 최대 20점까지 인정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3.2 산업체 대상 교육	개인		건당 5					
	3.3.3 일반인 및 학생대상 산학협력교육	개인		건당 2					
	3.3.4 산업체 등 경영 및 기술지도	개인		건당 10	• 학기당 20점까지 인정				
	3.3.5 산학연협동교육 및 워크숍 참석	개인		건당 3					
	3.3.6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	개인		건당 3, 6					• 학기당 20점까지 인정
	3.3.7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	개인	20-40%	0-50	•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실적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및 연구과제수주, 연구과제제안서 제출 등)으로 평가	-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3.8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	개인	0-5%	5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3.9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실적	개인	0-20%	0-50	• 최대 39점까지 인정	- 기본목표치 3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3.10 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	개인		100만원당 5					
	3.3.11 교재교구 및 기자재 유치	개인		1000만원당 10					
	3.3.12 동아리 활동실적	개인	35%		• 학술동아리, 취업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활동계획서 대비 실행, 취업, 경진대회 및 운영결과, 지도교수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	- 기본목표치 7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 수상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수상 실적	4.1.1 이사장상	개인	가중치 미선택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이사장상 •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3.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4.1.2 총장상	개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상 •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2.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4.1.3 정부기관평가 등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개인		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및 정부재정 지원사업 관련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위촉된 교원 •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건수별로 0.3-3.0점 배점. 단, 위촉 후 실제 업무수행이 없는 경우 배점하지 않을 수 있다. 			
	4.1.4 국제수상	개인		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기관 수상 			
	4.1.5 전국규모단체 수상	개인		0.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기관장/자치단체장 및 이와 유사한 수상, 세계유명인명사전 등재 등 			

5. 경고·주의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경고·주의 실적	5.1.1 경고	개인	가중치 미선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시 감점 			
	5.1.2 주의	개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시 감점 			

6.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	6.1.1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	학과	가중치 미선택	0-5.0	외국인 유학생 수와 중도탈락률			

7. 연구비 수주 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연구비 수주 실적	7.1.1 연구비 수주 실적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지자체 또는 공기업 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민간기업의 용역 수주 실적 - 국제연구과제 수주 실적 (한화(원)로 환산시) - 평가기간 입금액 기준	개인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참여 연구원 기여배분)	가중치 미선택		[수주금액 기준] • 10억원초과 : 5.0점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0점 •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 3.0점 • 1억원초과 ~ 2억원이하 : 2.0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0점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0.5점			

8. 책임시수 미달(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영역 감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 가 기 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책임시수 미달	8.1.1 책임시수 미달	개인	가중치 미선택	미달 시수당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영역에서 책임시수 미달 시수당 -5점 감점 			

[별첨 4]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 준	평 가 기 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1.1 학생 관리	1.1.1 신입생 총원율	학과	20%		• 신입생 수/모집정원×100 (단과대학, 학부(과)별) (감점제)	99%		
	1.1.2 재학생 총원율(4/1, 10/1)	학과	10%		• 기본 점수 + ((해당연도 총원율 - 전년도 총원율)*계수) - ((기준값-해당연도 총원율)*계수)			
	1.1.3 중도탈락율(4/1, 10/1)		10%		• 기본 점수 + ((해당연도 중도탈락률 - 전년도 중도탈락률)*계수) - ((기준값-해당연도 중도탈락률)*계수)			
	1.1.4 신입생 수준	학과	5%		• 1차 합격자 등록률(수시 및 정시)			
* 1.1.2 ~ 1.1.3 에 관한 평가는 대학 전체의 재학생 수 증감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2 수업 평가	1.2.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	개인	12%		• 학기당 대상강좌 총 평점 평균			
1.3 교육 개발	1.3.1 교육자료 개발활용	개인	10%	학기당 3-20	• 교육자료의 수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	산학협력중심 : 20점		
1.4 수업 담당	1.4.1 담당과목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영향)	개인		과목당 5	• 학기당 2과목 초과 담당과목 수 (학부(과)상 보직교수는 학기당 1과목 초과 담당과목 수)			
	1.4.2 캡스톤디자인 담당교과목 수	개인		과목당 5	• 캡스톤디자인 관련 교과목 수			
	1.4.3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개인		학기당 1과목	• 프로젝트 기반 수업운영 과목의 학점단위 (1:2학기 : Learning Concert, 여름·겨울학기 : Active Learning)			
	1.4.4 수업일수 미준수(감점)	개인		학기당 (-2.5~0)	• 1학기 또는 2학기 수업일수 미달시 감점(책임시수별 수업일수 차등 적용)			
	1.4.5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미준수(감점)	개인		과목당 (-1.5~ -0.5)	•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담당 과목 수에 따라 차등)			
	1.4.6 성적평가 입력기간 미준수(감점)	개인		과목당 (-1.5~ -0.5)	• 기간 내 미입력 시 감점 (담당 과목 수에 따라 차등)			
1.4.7 성적 이의신청 미응답(감점)	개인	학기당 (-3~-1)	• 성적 이의신청 미응대 시 감점 (건수 구간별 감점)					
1.5 학생 지도	1.5.1 학생상담 지도	개인	학기당 10	• 학기당 20회 (1회 부족시 1점 감점)				
	1.5.2 학생행사 입장지도	개인	학기당 1,3,5	• 학기당 평가에 따라 3단계 배점				

2. 연구 및 창작활동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2.1 학과 평가 (연구)	2.1.1 국내외 저명학회지(학과)	학과	산학협력 중심 0%		• 학부(과)별 국내외 저명 학회지 논문 총점			
	2.1.2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학과)	학과			• 학부(과)별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			
2.2 논문	2.2.1 박사학위 논문	개인	-	200		- 승진심사요건에만 적용		
	2.2.2 국제저명학회지	개인	산학협력 중심 0-60%	450	• 기존방식에서 상한부여 (목표대비 150%까지 평가점수 인정) • 목표달성이 미흡한 경우 감점부여 (목표대비 40%미만부터 감점부여)	산학협력중심 : 150점		
	2.2.3 국제일반학회지	개인		150				
	2.2.4 국내저명학회지	개인		150				
	2.2.5 국내일반학회지	개인	0-20%	100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2.6 본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	개인		100				
	2.2.7 타 대학 및 연구소 논문집	개인	80					
	2.2.8 종합 전문잡지	개인	음영부분 합계 0-20%	50		- 기본목표치 45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2.9 국내저명학회지에의 논평, 시평 등	개인	30						
2.3 저서	2.3.1 전문저서(대학교재 등)	개인	0-20%	100-150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3.2 번역서(최초번역) 및 중등교재	개인		80-100				
	2.3.3 수험서 및 사전류	개인		50				
	2.3.4 학술자료집 및 편저	개인		50				
	2.3.5 저서 개정판	개인		30	• 1/3 이상 개정시 인정			
2.4 학술대회	2.4.1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개인		150				
	2.4.2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개인		100				
	2.4.3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개인		80/40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8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40점			
	2.4.4 전국규모학술대회 논문발표	개인		40/2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4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20점			
	2.4.5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	개인		30/15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3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15점			
	2.4.6 전국규모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개인		20/1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2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10점			
	2.4.7 국제학술대회의 사회 (좌장, 토론)	개인		30/15	• 국제저명학회 학술대회 : 30점 • 국제일반학회 학술대회 : 15점			
	2.4.8 전국규모학술대회의 사회 (좌장, 토론)	개인		20/10	• 등재후보학회지 이상 학술대회 : 20점 • 일반학회 학술대회 : 10점			
	2.4.9 전국규모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	개인		2	• 학기당 10건 이내만 인정			
2.5 창작 발표	2.5.1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특선이상	개인	0-50%	150	•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인정)	- 기본목표치 1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2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입선	개인		75				
	2.5.3 공인된 공모전 특선이상	개인		75				
	2.5.4 공인된 개인전 (1인, 2인, 기획전)	개인		37.5 - 150				
	2.5.5 공인된 초대전 출품 (국제, 국내)	개인	0-20%	35 - 105	• 신작 작품일 경우만 인정 (도록 및 전체작품 CD제출 시에만인정)	- 기본목표치 142.5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6 공인된 공모전 입선	개인		37.5				
	2.5.7 문예 단행본 출판	개인		150	• 평가기준 엄격화	- 기본목표치 2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2.5.8 문예지 게재(소설, 희곡)	개인	0-50%	50	• 평가기준 엄격화			
	2.5.9 문예지 게재 (시, 수필, 평론)	개인		30	• 평가기준 엄격화			

3. 산학협동 및 봉사 업적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3.1 교외 봉사	3.1.1 정부 중앙행정기관 자문 위원(산하기관 포함)	개인	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당 5건 이내만 가능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1.2 광역자치단체이상 자문위원	개인		5					
	3.1.3 시·군·구 자문위원	개인		2					
	3.1.4 국제학회 및 단체 임원	개인		10					
	3.1.5 전국규모 전문학회 회장단	개인		10					
	3.1.6 전국규모 전문학회 임원	개인		5					
	3.1.7 정부 중앙행정기관 심사 위원(산하기관 포함)	개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6점까지 인정
	3.1.8 시·군·구 심사위원	개인		2					
	3.1.9 신문투고 및 방송출연	개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분야에 한하며, 우송 대학교 소속을 밝힌 경우 인정하며, 학기당 26점까지 인정
	3.1.10 잡지게재 및 기고	개인		10					
	3.1.11 비교과활동 및 동아리의 지역사회 협력활동	개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당 20점까지 인정
3.2 교내 봉사	3.2.1 학부장급	개인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교원 상대평가함(순위) 				
	3.2.2 취업주임교수급	개인	0-10%						
	3.2.3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	개인	0-2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 및 역할별 차등 배점 	-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3.2.4 위원회위원 및 학생단체 지도교수	개인		건당 2					
	3.2.5 국제교류	개인		건당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출장 결과에 따른 3단계 평가 				
	3.2.6 입시홍보 고교방문	개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홍보 고교수에 따라 배점 				
	3.2.7 입시홍보 고교방문 특강	개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홍보 고교방문시 특강 				

4. 산학협력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기준	평가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4.1 산학협력	4.1.1 학과별 취업률	학과	5%		•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기간일 종합취업률			
			5%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상 업적평가기간일 종합취업률			
			5%		•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차(6월) 유치취업률			
	4.1.2 개인별 건강보험 DB기준 취업실적	개인	13%		• 지도학생 취업 1인당 1점 배점 • 비지도학생 취업 1인당 0.67점 배점	교원 개인당 5점		
	4.1.3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설	개인	5%	건당 10	•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인수	12점		
	4.1.4 현장실습 및 인턴십	개인			•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학생수 (평가등급 구간별 배점)			
	4.1.5 캡스톤디자인 지도	개인			• 전시회 참여 작품수 × 1 (최대 10점)			
	4.1.6 창업(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인			• 창업교육담당건수 × 3			
	4.1.7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개인			•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건수 × 3			
	4.1.8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보고서	개인	0-5%	50	•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으로 업적이 인정된 경우의 외부 위탁 연구 보고서는 제외	- 기본목표치 5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1.9 산업체 등 외부위탁 연구비 총액	개인	산학협력 중심 10-60%	100만원당 22.5	• 산학협력단 수입금액으로 평가	- 중심유형별 기본 목표치 산학협력 중심 : 675점 (3,000만원) 이상		
	4.1.10 국제특허 등록	개인	0-50%	675		- 기본목표치 10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1.11 국제특허 출원	개인		100				
	4.1.12 국내특허 등록	개인		225	• 소프트웨어 등록시 50점			
	4.1.13 국내특허 출원	개인		50				
	4.1.14 실용신안 등록	개인		50				
	4.1.15 기술이전 수입 금액	개인		100만원당 63	• 기술이전 수입료 총액			
	4.1.16 기술이전 건수	개인		50	• 기술이전 건수			
	4.1.17 교원 창업 및 운영	개인		10-50	• 창업, 운영, 기관납부, 채용 등 실적에 따라 10-50점			
	4.1.18 산업현장연수/교수법 연수	개인	0-5%	주당 5	• 최대 20점까지 인정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1.19 산업체 대상 교육	개인		건당 5				
	4.1.20 일반인 및 학생대상 산학협력교육	개인		건당 2				
	4.1.21 산업체 등 경영 및 기술지도	개인		건당 10				
	4.1.22 산학연협동교육 및 워크숍 참석	개인		건당 3			• 학기당 20점까지 인정	
	4.1.23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	개인		건당 3.6			• 학기당 20점까지 인정	
	4.1.24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	개인	산학협력 중심 20-60%	0-50	•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실적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및 연구과제수초, 연구과제제안서 제출 등)으로 평가	산학협력 중심 80점 (등급적용 I-VI 등급)		
	4.1.25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	개인	0-5%	5		- 기본목표치 2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1.26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실적	개인	0-20%	0-50	• 최대 39점까지 인정	- 기본목표치 3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4.1.27 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	개인		100만원당 5				
4.1.28 교재교구 및 기자재 유치	개인	1000만원당 10						
4.1.29 동아리 활동실적	개인	산학협력 중심 0-35%		• 학술동아리, 취업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활동계획서 대비 실행 취업, 경진대회 및 운영결과, 지도교수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	- 기본목표치 70점 적용 (등급적용 I-VI 등급)			

5. 수상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수상 실적	5.1.1 이사장상	개인	가중치 미선택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 이사장상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3.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5.1.2 총장상	개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장상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2.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5.1.3 정부기관평가 등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개인		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및 정부재정 지원사업 관련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위촉된 교원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건수별로 0.3-3.0점 배점. 단, 위촉 후 실제 업무수행이 없는 경우 배점하지 않을 수 있다. 			
	5.1.4 국제수상	개인		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인기관 수상 			
	5.1.5 전국규모단체 수상	개인		0.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기관장/자치단체장 및 이와 유사한 수상, 세계유명인명사전 등재 등 			

6. 경고·주의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경고·주의 실적	6.1.1 경고	개인	가중치 미선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시 감점 			
	6.1.2 주의	개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 시 감점 			

7.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	7.1.1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적	학과	가중치 미선택	0-5.0	외국인 유학생 수와 중도탈락률			

8. 연구비 수주 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 점 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연구비 수주 실적	8.1.1 연구비 수주 실적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지자체 또는 공기업 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민간기업의 용역 수주 실적 - 국제연구과제 수주 실적 (한화(원)로 환산시) - 평가기간 입금액 기준	개인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참여 연구원 기여배분)	가중치 미선택		[수주금액 기준] • 10억원초과 : 5.0점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0점 •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 3.0점 • 1억원초과 ~ 2억원이하 : 2.0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0점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0.5점			

9. 책임시수 미달(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영역 감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요소	평가 단위	가중치	원점수	배점기준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책임시수 미달	9.1.1 책임시수 미달	개인	가중치 미선택	미달 시수당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영역에서 책임시수 미달 시수당 -5점 감점 			

[별첨 5]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비정년트랙 계약제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1. 교육 및 학생지도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 결과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1.1 교과 교육	1.1.1 책임 시수(감점)	개인	30%	-15점/시수	• 정규학기 책임 시수(학기당 7시수) (보직교수 및 특임업무 시 책임시수 별도 산정) • 책임 시수 미달 시 시수당 15점 감점	100점		
	1.1.2 강의 평가	개인	20%	별도 산식	• 대상 강좌 총 평점 평균			
1.2 산학 협력	1.2.1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개인	0~10%	25점/건	• 산학연 연계 교과목 개발 건 수	100점		
1.3 학생 지도	1.3.1 학생상담 및 지도	개인	20%	2점/회	• 학생 상담 횟수	100점		
1.4 대학 경쟁력	1.4.1 고교-대학 연계 활동	개인	20~30%	30점/건	•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00점 [교육 중심: 150점]		
				10점/회	• 입시 홍보 고교 방문			
				10점/회	• 전공 특강			

2. 연구 수행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 결과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2.1 산학 연구	2.1.1 제안서 제출	개인	30%	20점~50점/건	• 정부주관 또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재정지원사업 계획(보고)서 집필 건수당 50점 • 지자체주관 또는 총 사업비 1억 이상 재정지원사업 계획(보고)서 집필 건수당 30점 • 학내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건수당 20점	100점 [연구 중심: 150점]		
	2.1.2 연구 수주	개인	30~50%	22.5점/100만원	• 산학협력단 수입금액	1,125점 [연구 중심: 2,250점]		
2.2 논문	2.2.1 국제저명학회지	개인	10~30%	450점/편	• 논문 배점 * (1/(n+2)) (n= 저자 수, 교신 또는 주저자의 경우 (1*2/(n+2)) 적용)	150점		
	2.2.2 국제일반학회지	개인		150점/편				
	2.2.3 국내저명학회지	개인		150점/편				
2.3 지식 재산권 가출원	2.3.1 국제특허 등록	개인	10~30%	675점/건	• 국제특허 등록 건 수 * (1/(n+2)) (n= 발명자 수, 책임 발명자의 경우 (1*2/(n+2)) 적용)	200점		
	2.3.2 국제특허 출원	개인		100점/건	• 국제특허 출원 건 수 * (1/(n+2)) (n= 발명자 수, 책임 발명자의 경우 (1*2/(n+2)) 적용)			
	2.3.3 국내특허 등록	개인		225점/건	• 국내특허 등록 건 수 * (1/(n+2)) (n= 발명자 수, 책임 발명자의 경우 (1*2/(n+2)) 적용)			
	2.3.4 국내특허 출원	개인		50점/건	• 국내특허 출원 건 수 * (1/(n+2)) (n= 발명자 수, 책임 발명자의 경우 (1*2/(n+2)) 적용)			
	2.3.5 기술이전 건수	개인		20점/건	• 기술이전 계약 건 수			
	2.3.6 기술이전 수입 금액	개인		63점/100만원	• 산학협력단 수입금액			
	2.3.7 교원 창업 및 운영	개인		10~50	• 창업, 운영, 기금납부, 채용 등 실적에 따라 10~50점			

3. 산학협력 및 봉사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결과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3.1 산학 협력	3.1.1 관리산업체 관리 및 활용	개인	70%	10점/인	• 관리산업체 취업 학생 수	[연구중심 : 50점] [교육중심 : 100점] [산학협력 중심: 150점]		
				5점/인	• 일반산업체 취업 학생 수			
				2점/인	• 관리산업체 현장실습 연계 학생 수			
				1점/인	• 관리산업체 인턴십 연계 학생 수			
				4점, 8점/건	• 국내 산업체 업무협약 : 4점(최대 10건) • 글로벌 산업체 업무협약 : 8점(최대 10건)			
	3.1.2 캡스톤디자인 지도	개인		2점/건	• 캡스톤디자인 전시회 참여 작품 수			
	3.1.3 공용장비 활용 기업 수	개인		10점/업체	• 산학협력단 승인 실적만 인정			
	3.1.4 공용장비 운영 수입	개인		10점/100만원	• 산학협력단 수입금액			
	3.1.5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	개인		3점, 6점/건	• 국내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 : 3점 • 글로벌 산업체 현장순회 학생지도 : 6점			
	3.1.6 산업체 대상 교육	개인		5점/건				
	3.1.7 비교과활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	개인		5점/건				
	3.1.8 일반인 및 학생대상 산학협력 교육	개인		2점/건				
	3.1.9 산업체 등 경영 및 기술지도	개인		10점/건				
3.1.10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실적	개인	0-50						
3.1.11 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	개인	100만원당 5						
3.1.12 교재교구 및 기자재 유치	개인	1,000만원당 10						
3.2 교내 봉사	3.2.3 대학발전을 위한 특임활동 (기업협업센터(ICC) 특임활동 포함)	개인	30%	20~100점	• 중요도 및 역할별 차등 배점	100점		

4. 수상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수상 실적	4.1.1 이사장상	개인	가중치 미선택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이사장상 •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3.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4.1.2 총장상	개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상 • 업적평가기간 내 중복 수상시 최초 수상은 2.0점 부여하며, 중복 수상 실적부터는 원점수의 1/2 배점 부여 			
	4.1.3 정부기관평가 등 주요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개인		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위촉된 교원 • 특별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건수별로 0.3-3.0점 배점. 단, 위촉 후 실제 업무수행이 없는 경우 배점하지 않을 수 있다. 			
	4.1.4 국제수상	개인		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기관 수상 			
	4.1.5 전국규모단체 수상	개인		0.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기관장/자치단체장 및 이와 유사한 수상, 세계유명인명사전 등재 등 			

5. 연구비 수주 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 점수
연구비 수주 실적	5.1.1 연구비 수주 실적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지자체 또는 공기업 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 - 민간기업의 용역 수주 실적 - 국제연구과제 수주 실적 (한화(원)로 환산시) - 평가기간 입금액 기준	개인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참여 연구원 기여배분)	가중치 미선택		[수주금액 기준] • 10억원초과 : 5.0점 •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4.0점 •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 3.0점 • 1억원초과 ~ 2억원이하 : 2.0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0점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0.5점			

6. 경고·주의실적(가중치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점제로 실시함)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단위	영역내 가중치	배점 단위	산출 방법	평가 기준		
						목표치	달성도	평가점수
경고·주의 실적	6.1.1 경고	개인	가중치 미선택	-5.0	• 경고 시 감점			
	6.1.2 주의	개인		-2.0	• 주의 시 감점			

[별첨 6]

교원업적 및 역량평가기준표(비정년트랙 계약제 교육전담 전임교원)

심사항목	세부항목별 배점		배점 기준	심사점수
공통 평가항목	① 강의평가 결과	20	- 4.80 이상 : 20점	
			- 4.60 이상 ~ 4.80 미만 : 15점	
			- 4.40 이상 ~ 4.60 미만 : 10점	
			- 4.10 이상 ~ 4.40 미만 : 5점	
			- 4.10 미만 : 0점	
	② 수업담당 시수 (학기당 평균)	20	- 20시수 이상 : 20점	
			- 15시수 이상~20시수 미만 : 10점	
			- 12시수 이상~15시수 미만 : 5점	
			- 12시수 미만 : 0점	
	③ 학사업무 준수	10	- 강의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1일 경과시, 1일당 -2점)	
			- 성적입력 및 처리기간 준수 (1일 경과시, 1일당 -2점)	
			- 휴·보강 지침 준수 (보강 미실시 시간당 -2점)	
	④ 학생지도	10	- 교육관련 학생상담 실적 (10명당 1점)	
			- 대회 참석 학생지도 (1건당 0.5점)	
			-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실적 (1명당 0.5점)	
⑤ 특별임무 및 기여도	10	- 교육자료 개발 (1건당 1점)		
		- 교내 특강 (1건당 0.5점)		
		-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1건당 0.5점)		
		-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개발 (1건당 2점)		
학부장 및 보직교수 평가	① 교수로서의 자질	10	- 교육전담교원으로서의 역할, 학생 지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② 대학발전 기여도	20	- 제출된 성과보고서 및 계획서를 통 해 학과발전 기여도 및 향후발전 계 획에 기초하여 평가	
가점	① 학생교육지도 충실도	1~5	- 학생교육지도에 헌신한 정도에 따라 부여함	
	② 교수법 개선정도	1~5	- 새로운 교수법 도입으로 학생 만족도 제고 -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교수법 연수 참석 등 개선 노력 정도	
감점	교육관계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등	-5 ~ -10	- 성적평가 허위작성	
		-5 ~ -15	- 주의 및 경고	
		-5 ~ -20	- 기타 교원로서의 의무 불이행 및 근무 태도불량 등	
합 계		100		